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62

제출년월일 : 2015. 8. 2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2015.1.1.)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청소 예산 자립도 향상 및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량배출사업장 중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제외 단서 신설 (안 제2조)

나.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는 조문 신설 (안 제5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1단계 : 2015년, 2단계 : 2017년)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폐기물 배출억제 및 감량화 적극 추진

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 처리시 수수료 종량제 규정 삭제 (안 제16조)

마.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별지서식 삭제

- 과태료 부과 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신설(2011.4.6.)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 시행령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서울시 생활환경과-15862, '14.11.12.)
- 종량제봉투 수수료 현실화 추진 계획(청소행정과-1061, 2015.1.16. 구청장 방침)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신설 · 강화되는 규제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 4. 23. ~ 5. 13.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권고사항 반영

- 평가대상 조문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공개성
- 평가결과 : 보조금 지급의 구체적인 절차·기준이 없으므로,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과 공개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치사항 : 권고안 반영

구청장 방침	심의회 상정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⑦ <생　략> ⑧ 신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⑦ (원안과 같음)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다.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라. 지역경제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 동의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 통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신고한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이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라 한다)"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

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적정처리 할"을 "적정처리할"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20세대"를 "30세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영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시설"을 "해당 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을 "다량배출사업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의”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유”를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로, “30일 이내에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호 중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처리방법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9조제2항 관련)

□ 일반주택 및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가격

(단위 : 원)

구분	일반가정용		사업장용	
	2016년까지	2017년부터	2016년까지	2017년부터
1ℓ	70	100	-	-
2ℓ	140	190	-	-
3ℓ	210	300	-	-
5ℓ	350	500	500	700
10ℓ	700	1,000	1,000	1,400
20ℓ	1,400	2,000	2,000	2,800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는 사업장별로 처리자 또는 운반업자 간의 별도 계약에 따른다.

□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단위	수수료	
		2016년까지	2017년부터
공동주택	kg	100	13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단서 신설>	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신고한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조(구청장의 책무) (생 략)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

	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이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④ ----------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라 한다)----------.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
⑤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3. ----------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⑥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도 종량제 시행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생 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 ---------- ---------- -- 적정처리할 ---------- ---------- ---------- ----------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 략)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② ---------- ---- 30세대 ---------- ---------- ---------- ---------- ----------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 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8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시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 략)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 ---- ---------- ---------- ---------- ---------- ----------.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1. ---------- ----------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 ---------- ---------- ----------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	1.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 개시일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내용----------.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다량배출사	4.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	라.---------- ---------- 내용-----

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
<신 설>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1. ---------- 처리방법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별표 8 과태료

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9조제2항 관련)

□ 일반주택 및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가격

(단위 : 원)

구분	일반가정용	사업장용
1ℓ	40	-
2ℓ	80	-
3ℓ	120	-
5ℓ	200	250
10ℓ	400	500
20ℓ	800	1,000

□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단위	수수료
공동주택	kg	90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9조제2항 관련)

□ 일반주택 및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가격

(단위 : 원)

구분	일반가정용		사업장용	
	2016년까지	2017년부터	2016년까지	2017년부터
1ℓ	70	100	-	-
2ℓ	140	190	-	-
3ℓ	210	300	-	-
5ℓ	350	500	500	700
10ℓ	700	1,000	1,000	1,400
20ℓ	1,400	2,000	2,000	2,800

□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단위	수수료	
		2016년까지	2017년부터
공동주택	kg	100	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조치 없이 대행업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은 '지방제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에 따른 세입·세출 발생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세입·세출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청소행정과 박소연
연 락 처	02-3153-9207